##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01 발의연월일: 2024. 12. 4.

발 의 자:백혜련・이기헌・박홍배

문진석 • 천하람 • 김 윤

김한규 · 박상혁 · 이수진

송기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정보 부재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등의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 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법률 제 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리"를 "「약사법」제23조의3제 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			
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			
다)를 <u>미리</u> 확인하여야 한다.	「약사법」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		
	<u>템을 통하여 미리</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